



업 무 협 약 서

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(이하 "양 기관"이라 한다.) 은 50+컨설턴트의 '찾아가는 상담 서비스' 제공을 통해 양 기관 공동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부협력 사항을 체결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 간의 공동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공동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원칙)

- 1.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상대방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- 2. 협력분야 사업 진행 시 세부 사항은 별도로 계획하여 관리 운영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
- 1. 50+컨설턴트 생애설계 상담서비스 지원
- 2. 일자리 부르릉 버스 내 중장년 특화 상담 지원
- 3. 중장년여성 구직상담자 연계 지원
- 4.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등에 찾아가는 50+생애설계상담 지원
- 5. 양 기관의 지식정보 교류 및 협력
- 6.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 추진 협력

제4조(비밀유지) 이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.

제5조(협약기간)

- 1.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 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
- 2.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6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본 협약 당사자의 명칭, 대표자 등 단순 사항의 변동 발생 시에도 협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제7조(신의성실의 원칙) 협약기관은 이 협약서에서 정한 역할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에 최선을 다하며,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및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3월 12일



원장 오혜란



대표이사 김 영 대





업 무 협 약 서

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(이하 "양 기관"이라 한다.)은 50+컨설턴트의 '찾아가는 상담 서비스' 제공을 통해 양 기관 공동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부협력 사항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 간의 공동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공동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원칙)

- 1.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상대방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- 2. 협력분야 사업 진행 시 세부 사항은 별도로 계획하여 관리 운영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
- 1. 50+컨설턴트 생애설계 상담서비스 지원
- 2. 일자리 부르릉 버스 내 중장년 특화 상담 지원
- 3. 중장년여성 구직상담자 연계 지원
- 4.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등에 찾아가는 50+생애설계상담 지원
- 5. 양 기관의 지식정보 교류 및 협력
- 6.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 추진 협력

제4조(비밀유지) 이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.

제5조(협약기간)

- 1.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
- 2.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6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본 협약 당사자의 명칭, 대표자 등 단순 사항의 변동 발생 시에도 협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제7조(신의성실의 원칙) 협약기관은 이 협약서에서 정한 역할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에 최선을 다하며,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및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3월 12일



대표이사 김 영 대



원장 오혜란